

(첨부1)

표준 약관 개정(안) 주요내용

I 개정사유

- 금융위원회 발표 「가계부채 종합대책(‘17.10월)」 및 「저축은행·여전업권 DSR 시범도입(‘18.10월)」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앙회는 ‘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기준*’ 제정·시행 안내(‘18.10.26)
 - * 중앙회 문서(영업지원-249, ‘18.10.26) 참고
- 이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를 여신 거래약정서에 명시

II 개정내용

거래처의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 신설

※ 관련규정 : 여신거래약정서 제12조 개정

- 기 제정·시행된 ‘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기준’ 상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상 명시
 - ①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
 - ②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미제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
 - ③ 용도의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,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 제한

III 신·구조문 대비표 [첨부 2] 참조

IV 시 행 일 : ‘18. 11. 26.

(첨부2)

표준 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여신거래약정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※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10 조, 제11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※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>제12조(자금용도와 유용시 제재조치)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(해당여신을 즉시 상환)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 ② 자금용도와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(3)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 ③용도와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,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(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) 됩니다.</p>	<p>제12조 신설조항 가계용 미적용</p> <p>자금용도와 유용시 제재조치 신설</p>
<p>제12조(기타 특약사항) (생략)</p>	<p>제13조(기타 특약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항 변경</p>
<p>제13조(입금 의뢰) (생략)</p>	<p>제14조(입금 의뢰)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항 변경</p>